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3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홍기원 · 서미화
한민수 · 이성윤 · 박 정
문대림 · 이수진 · 임미애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제6호

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).

법률 제 호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중 “개임(改任)”을 “교체 임명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“개임”을 “교체 임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해양조사·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·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·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4호,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·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제36조(해양조사·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<u>개임</u> (改任) <u>한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6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교체 임명----- ----- -.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2조(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	제52조(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) ① -----

